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1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차규근 · 김영배 · 김선민
황운하 · 정춘생 · 김준형
김재원 · 한창민 · 권칠승
서왕진 · 최혁진 · 백선희
강경숙 · 김준혁 · 임미애
정준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 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100分の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90조의2의 제목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begin{array}{l} \text{연동} \\ \text{배분} \\ \text{의석} \\ \text{수} \end{array} = \left[\left(\frac{\text{당해 선거구 지방의회 의원정수}}{\text{추천하지 아니한 당해 선거구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수}} \right) \times \frac{\text{해당 정당의 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text{해당 정당의 당해 선거구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인수}} \right]$$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당해 선거구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text{잔여 배분의석수} = \left(\frac{\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 - \text{당해 선거구의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 \right)$$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text{조정의석수} = \frac{\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 \times \text{당해 선거구의 연동배분의석수}}{\text{당해 선거구의 각 연동배분의석의 합계}}$$

③ 제2항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생 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 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 定數의 <u>100분의 10</u> 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 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 으로 한다.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00분의 20-----. -----. -----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①·② (생 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u>100분의 10</u> 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00분의 20-----. -----.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u>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u>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 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 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begin{array}{l} \text{연 동} \\ \text{배 분} \\ \text{의 석} \\ \text{수} \end{array} = \left[\left(\begin{array}{l} \text{당 해} \\ \text{선 거 구} \\ \text{지 방 의} \\ \text{회 의} \\ \text{원 정 수} \end{array} - \begin{array}{l} \text{당 해} \\ \text{선 거 구} \\ \text{지 방 의} \\ \text{회 의} \\ \text{원 정 수}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text{해 당 정 당 의 당 해 선 거 구 비 례 대} \\ \text{표 지 방 의 회 의 원 선 거 득 표 비 율} \\ \text{해 당 정 당 의 당 해 선 거 구 지 역} \\ \text{구 지 방 의 회 의 원 당 선 인 수} \end{array} \right]$$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당해 선거구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begin{array}{l} \text{잔여} \\ \text{배분} \\ \text{의석} \\ \text{수} \end{array} = \left(\begin{array}{l} \text{당해 선거} \\ \text{구 비례대} \\ \text{표지방의회} \\ \text{의원 의석} \\ \text{정수} \end{array} - \begin{array}{l} \text{당해 선거} \\ \text{구의 각 연} \\ \text{동배분의석} \\ \text{수의 합계} \end{array} \right) \\ \times \begin{array}{l} \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회의} \\ \text{원선거 득표비율} \end{array}$$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rray}{l} \text{조정} \\ \text{의석} \\ \text{수} \end{array} = \begin{array}{l} \text{당해 선거구} \\ \text{비례대표지방} \\ \text{의회의원 의} \\ \text{석정수}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당해 선거구의} \\ \text{연동배분의석} \\ \text{수} \end{array} \div \begin{array}{l} \text{당해 선거구의 각 연동배분의석의} \\ \text{합계} \end{array}$$

<신 설>

③ 제2항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 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 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u>100분의</u> <u>5</u>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 도로 빼야 한다. ④ (생략)	----- ----- -----<u>100분의</u> <u>3</u>----- ----- -----.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	---